

노동인권 토론회 및 워크숍

# 청소년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일 시 2008. 2. 19(화) 13:00 ~ 18:0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 최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인권 토론회 및 워크숍

# 청소년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일 시 2008. 2. 19(화) 13:00 ~ 18:0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 최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행사 진행

13:00 ~ 15:50	1부 토론회 (사회 : 윤성봉)	<p><b>주제 발표</b> 이수정(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p> <p><b>사례 발표</b> 또또 문학정보고 학생</p> <p><b>지정 토론</b>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부 교수)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효관(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p> <p><b>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b></p>
15:50 ~ 16:00	휴 식	
16:00 ~ 18:00	2부 워크숍 (사회 : 배경내)	<p><b>지정 토론</b> 정건희(군산YMCA청소년문화의집 관장)</p> <p>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p> <p>천희완(전교조 참교육실장)</p> <p>정경화(민주노동당 고양시 위원회 위원장)</p> <p>파이루(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p>
18:00	폐 회	

## 자료 차례

제 1 부 토론회 청소년 노동의 현주소와 대응과제	3
주제 발제 : 청소년 노동의 현주소와 대응과제	이수정 5
사례 발표 1. 패스트푸드점 사례	또 또 35
사례 발표 2. 음식점 서빙 사례	문학정보고 학생 40
토 론 1	조돈문 44
토 론 2	김기현 45
토 론 3	전효관 52
제 2 부 워크숍 청소년노동인권 확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57
토 론 1. 청소년 알바실태 대응활동	정건희 59
토 론 2. 청소년 노동자 조직화 방향	김진억 73
토 론 3. 청소년 노동과 학교의 역할	천희완 75
토 론 4. 청소년 인권운동과 지역운동	장경화 80
토 론 5. 청소년 인권운동과 청소년노동	파이루 86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사 대상 설문 조사지	89



제 1 부 토론회

청소년 노동의 현주소와 대응과제



주제 발표

## 청소년 노동의 현주소와 대응과제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청소년 노동의 현주소와 대응 과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수정

### I.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sup>1)</sup>은 노동하는 주체가 아니다. 청소년은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며 '공부하는 학생'이다. 청소년은 '내일'을 짊어질 인력이라지만 인권과 시민권을 가진 사회 구성원은 아니며, 지금 기성세대는 그들을 내일을 짊어질 인력으로 만드는 것에서조차 실패하고 있다(조한혜정, 2000).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흡수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1964년 당시 내무부에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위'가 만들어졌었는데, 그 후 40여 년간 '효율성'과 '실용성'에 따라 9차례 소관 부처가 변경되더니 급기야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에 따라 청소년 정책이 일관성 없이 흘러오는 동안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책은 아예 흐름조차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부하는 학생만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임금을 받으며 노동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는 비공식 영역에서만

1) 우리나라는 법령은 그 목적에 따라 청소년 연령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다. 즉,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기본법」의 경우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보호대상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제관련 각종 통계에서는 청소년 노동자를 15세~24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연소근로자'라 하여 13세(15세 미만인 자 취직인허증 비치)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근기법 기준에 따라 13세~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각종 통계학 적 분류와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특성상 노동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24세 미만까지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세~18세 미만의 탈 학교 상태의 청소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은 이 글의 한계이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자<sup>2)</sup>는 여타의 주변화 된 노동부문과 함께 노동시장에서는 항상 비가시화 되어 왔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생만이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청소년 노동자는 860만 비정규직 속의 비정규, 노동인권 교육의 부재, 학습권과 노동권의 충돌 속에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학교, 시민·사회·노동운동 진영 어느 곳에서도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거나 대응이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소년 노동의 의미를 청소년 노동이 처한 다양한 조건과 현실을 통해 살펴보고, 사회 곳곳에서 '알바', '현장실습생' 등으로 존재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모색을 하고자 한다.

## II. 청소년 노동의 현실과 특성

### 1. 청소년 노동 현실

IMF 구제금융 이후 [표1]과 같이 청소년의 노동경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청소년 2,910명 중 34.1%가 중2~고2 기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아르바이트 직종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전단지 돌리기', 고등학생의 경우 '음식점 카운터·서빙·배달'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의 대부분은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 할인마트, 치킨 배달, 택배 등 서비스·유통·판매직에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유통·판매직은 2007년 비정규관련법<sup>3)</sup> 시행 이후 가장 빠르게 비정규직화가 진행

2) 한국 사회의 경우 1960,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청소년은 미숙련 노동으로 노동 시장에 대거 유입하게 되었고, 이후 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학력 자본 획득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청소년은 점점 학교 제도로 편입된다. 이로써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였던 이들이 세대별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으로 등장하게 된다(정은주, 2003).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노동위원회법」(개정). 2007.7.1.부터 시행. 단, '차별시정제도'는 사업장별로 단계적 시행. 현재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중이며 2008.7.부터는 상시 노동자 100인 이

되고 있는 직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종에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집중되었다는 것은 청소년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청소년 노동자의 현실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 국내 청소년 시간제노동(아르바이트)에 대한 조사연구

조사기관	조사년도	조사지역	조사대상	노동경험 청소년의 비율
서울 YMCA	2000년	서울 및 10개 중소도시	14~21세 청소년 3,833명	30.4%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년	전국 45개 중고등학교	중고등학생 3,679명	29.2%
노동부	2002년	전국 6개 도시 중고등학교	중고등학생 3,471명	41.3%
참여연대	2002년	서울 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	중고등학생 1,106명	45.3%

※자료 출처 : 김예성, 2002; p.10 <표 2-1>

### (1) '88만원세대' 도 될 수 없는 청소년 노동자

'88만원세대'<sup>4)</sup>는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평균 임금 119만원에 20대 노동자의 임금비율 74%를 곱하여 탄생한 20대 비정규직을 의미한다. 860만 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데 교대와 산업대를 제외한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은 64%, 그 중 17.9%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 2005년 서울시청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105대 1이었을 정도로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20대는 더 괜찮은 일자리를 위해 일정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를 하거나 '샐러던트(Saladent, 샐러리맨과 스튜던트가 합쳐진 신조어)'로 생활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상 사업장에서 시행.

4)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2007)은 20대에 대한 경제학적 정의를 위해 자료를 찾던 중 비정규직으로 대학원생들을 모집하는 국회의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그 때 제시된 조건이 "통계에 능하고,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 "월급 90만원" 이었다고 한다.



'88만원세대'와 '1318 청소년'은 더 낮은 임금<sup>5)</sup>과 더 유연한 노동력의 보고(寶庫)가 되어 공존하거나 더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관계에 있다. 탈학교 한 청소년의 경우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추정되지만 그 규모나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청소년의 노동권 문제는 아예 드러나기도 힘든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표2] 여름방학대비 점검결과<sup>6)</sup>

지역	점검업소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고용 금지)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업소	적발내역 및 건수												계	
					근로조건 미명시(미계약)		연소증명 미비		야간휴일 위반		성교육 미실시		급여 지연 등					
'05	'06	'05	'06	'05	'06	'05	'06	'05	'06	'05	'06	'05	'06	'05	'06			
서울강남	90	51			6	18	4	15	3	6	3	3	1		1	5	12	29
서울강북	36	58			7	9	2	5	5		3	3	1		1	7	12	15
부산	84	47	1		3	6	2	5	3	2	1					3	6	10
대구	74	51	1	1	8	9	8	5	8	8		4			4	3	20	20
인천	191	99	1			9		2		3		4				4		13
광주	126	69			1	3	1	2				1					1	3
대전	63	51			14	8	11	5	9	6			2		1	2	23	13
울산	34	39		1	5	2	3	2	5	2		1			1	5	9	10
경기	36	70	1		3	17	1	13	2	3		8				24	3	48
계	734	535	4	2	47	81	32	54	35	30	7	24	4	0	8	53	86	161

※자료 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하인호(2007)에서 재인용

[표2]는 2005년과 2006년 여름방학대비 노동부의 점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6.4%였던 노동법 위반 비율이 2006년에는 15.1%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대상 업체 535곳 가운데 81곳이 총 161건의 노동법을 위반했는데, 유형별로

5) 2006.4. 참여연대의 '인터넷 상의 최저임금 위반 구인실태 조사' 결과 11개 구인정보 사이트 중 6개의 사이트에서 총 615건에 달하는 위반사례 발견. 업종별로는 △pc방(153건, 24.9%) △편의점(92건, 15%) △호프·주점(64건, 10.4%) △음식점(60건, 9.8%) 순으로 대부분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 업종.

6) 국가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2006.7.18.~2006.7.21.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 535개 사업장(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또는 청소년 집중 업종의 사업장 중심)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하인호, 2007). 노동부는 2005.6.20. 마련된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을 근거로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는 수도권(서울, 경기) 및 6개 광역시 지역, 겨울방학 기간에는 9개 도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다.

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이 54건,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이 53건, 연소자증명서 미비가 30건, 휴일·야간노동 규정 위반 24건 등 이었다.

2007년 7월 점검 결과도 600개 업체 점검 사업장 중 68.3%인 410개 사업장에서 715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노동법 위반 비율은 더 증가하였다. 위반 내용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259건(36.2%)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100개 업체 중에서 86개소(86.0%)로 가장 위반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주유소가 131개 업체 중 81개소(73.0%), 제조업 20개 업체 중 13개소(65.0%), 패스트푸드 334개 업체 중 204개소(61.1%)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홍보와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관계 중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노동법 등 관련정보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다.

대전YMCA가 지난해 6월 15부터 7월 20일까지 대전지역 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84.5%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한다"고 답해 법·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법·제도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재해에서도 취약하다. 노동부의 주요 점검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연소자보호조항 준수 여부에 치우치다보니 노동재해 실태는 더더욱 드러나지 않는다.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수도권 지역 일부 중고등학생의 노동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일한 일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16.7%가 "한 번 이상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표3] 청소년 아르바이트 종류별 사고 경험률

구분	사고경험률(%)
음식점	19.3
패스트푸드점	24.4
각종 배달	36.1
주유소	8.0

※ 자료 출처 :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07)



아르바이트 종류별 사고 경험률을 보면 [표3]과 같이 각종 배달 업무<sup>7)</sup>에 종사했던 이들의 사고 경험률이 36.1%로 가장 높았고, 패스트푸드 업종 24.4%, 음식점 19.3%, 주유소<sup>8)</sup> 8.0%로 나타났다. 사고의 종류도 교통사고, 화상, 찰림 및 베임 등 다양했는데 배달 업종의 경우 교통사고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사고 경험자의 30.3%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치료를 한 경우에도 자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는 29.0%였다. 이 중 산재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으로 치료한 경우는 8.1%에 불과 했다.

각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노동자는 위와 같은 각종 노동법적 권리 침해와 노동재해 외에도 언어폭력과 성폭력 등 위계 관계에 의한 폭력에도 상당수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장실습생, 노동자다! 아니다?

현장실습<sup>9)</sup>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전문계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의 운영형태를 보면 창업동아리, 교내실습, 학교기업 등 교내활동, 현장체험학습,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등이 있다.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 노동자에 비해 전문계고의 현장실습생은 교육과정의 일부이고 공식화된 영역인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이 이뤄지기 보다는 대부분 산업체 파견 형태의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이나 교사, 산업체 모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취업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실습 과정 모두가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실습생의 경

7) 치킨 집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사람을 피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종아리 근육에 파열이 있었으며 한 달 정도 깁스 한 사례가 있음(남, 17세).  
8) 주유소 바닥이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워 넘어져서 팔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한 후 3개월 정도 치료한 사례가 있음. 이후에도 가정형편 상 계속 아르바이트 하고 있음(남, 17세).  
9) 현장실습의 법적 근거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현장실습은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제3조의2(산학협동)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교육청의 운영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 사업주와 실질적인 노동관계에 있게 되지만, 현장실습생은 실습 받는 학생 신분이 우선이어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법제도적인 보호가 취약하다. 즉, 현장실습 담당 교사의 인식 부족<sup>10)</sup>, 노동부의 감독과 관리 소홀 속에 단지 노동관계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특례 규정<sup>11)</sup>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2006년 “현장실습 파견의 경우 취업을 전제로 한 수습”만 허용하기로 한 교육부의 정상화 방안대로라면 현장실습생도 당연히 근기법 상 노동자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연수생과 수습의 노동자성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소정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회사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채용건강진단을 마친 뒤 동 회사가 실시하는 연구기간 중에 있는 자의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도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이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1993.04.27, 근기 01254-75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실습생에게 근기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정책’의 엇박자, ‘권리’와 ‘보호’의 충돌

노동부의 행정해석(1993.04.27, 근기 01254-751)을 적용해 보면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현장실습생은 ‘학생’이다. 이렇게 각 부처마다 판단이 다르다보니 청소년 노동자들은 법제도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게 된다.

게다가 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자를 ‘연소근로자’라 하여 ‘보호’ 대상으로만

10) 전문계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2007년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실습 담당자의 노동교육관련 이수 실태를 보면 16개 시도 중 9개 시도만이 담당자 교육을 이수했으며, 교육내용은 근로기준법, 청소년 노동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졌으나 전반적으로 노동교육과 관계없는 내용이 많고 형식적이었으며, 실시 횟수는 1회에서 41회까지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으며, 이수시간도 1시간에서 151시간, 이수 교사 수는 2명에서 105명까지 있었다. 하지만 국감조사 시 교육 이수 근거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10개 시도만이 근거 서류를 제출하였다(노동건강연대, 2007. 김경원 토론회 중)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 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상정하다보니 지나치게 노동자로서의 '권리' 를 제약하는 경우가 생기고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근기법의 일부는 청소년 노동자의 대다수가 취업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 보호 취지에서 18세 미만자의 노동시간을 하루 7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3년 법 개정으로 현재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이 시행되고 있어 보호 취지가 무색하다. 또한, 동법에서는 18세 미만자가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 해 야간연장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처벌 또한 미흡하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편의점에서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청소년 노동자의 취업권 제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표4]와 같이 만 19세 미만자의 '취업금지' 업소와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구분하고 있는데 출입은 허용하면서 고용은 금지하는 업소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 연령과 관련해서도 근기법은 18세 미만자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연령적용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표4]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 미만자 취업금지 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유호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는 출입만 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자료 출처 :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2005.

청소년 노동자의 대부분은 학교 현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청소년 노동에 대한 법제도의 충돌과 제약 등으로 인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부는 법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지만 2003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44개 업소를 적발하여 10개 업소 10건의 사법처리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청소년보호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주요하게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은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방학 기간의 집중 지도·점검 실시, 관계부처 및 NGO단체 등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청소년근로 보호 T/F팀'구성, 사업주학교 교사·학생 등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강화 등이었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나도록 기존 단속위주의 보호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동소이한 실태조사나 '근로기준법 퀴즈 맞추기', '일하는 1318의 UCC 올리기' 등의 캠페인을 몇 차례 진행했을 뿐 '종합대책'이라고 할 만한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또한, 실태조사 시행 방법과 내용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2007년 실태조사 후 "청소년들 첫 알바의 기억은... '값진 경험'" 제목의 보도 자료를 보면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회원 587명을 대상으로 11일간 실시한 것으로 설문 내용 또한 "귀하가 첫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몇 살이셨나요?", "귀하의 첫 아르바이트는 다음 중 어느 업종이었나요?", "귀하가 첫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맨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등 이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이번조사 결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값진 사회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는 제대로 된 법적 대우를 못 받는 사례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 고용사업주의 노동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는 대안(?)을 내놓는데 그치고 있다.

노동교육과 관련해서도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 교육',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채 여전히 '중장기적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다. 교사와 학생에 대한 노동교육은 정규 과정에 포함되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 그러나 노동교육 실태를 보면 의욕 있는 일부 교사가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교육하거나, 교사에 대하여도 전문계교 교사에 한정하여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교육 내용 또한 노동관계법 지식전달에 그치고 있다. 특히, 법 준수 의무자인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도 '청소년 다수고용 업종 대표 간담회를 통해' 교육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나 계



획을 제시하지 않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로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시행 3년이 된다. ‘종합대책’ 이 되기 위해선 방학대비 점검결과만이 아닌 기타 계획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 교육 인적자원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처 모두 이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보완한 후 각 부처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3. ‘경제동물’ 을 키우는 학교 노동교육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 를 핑계로 한 학교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그동안 관련부처는 물론이고 개별 교사들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며, 노동운동 진영도 별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내용은 주로 사회과 하위주제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취급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노동교육이라기보다는 반(反)노동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2월 9일 교육부와 전경련에서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sup>12)</sup> 모형을 개발하여 각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교과 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배포를 잠시 중단한 사건이 있었다. 7차 교육과정 이후에 대한 논의나 차세대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경제교과서의 내용은 시장경제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인 내용 일색이었다. 그러나 전경련 등 경제계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해 오히려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이라며 관련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미 경제 교과서는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수출이 막히고 생산 규모가 축소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노동 생산성 범위 안에서 인상되어야 한다”, “노사 간의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힘의 대결은 서로 손해만 보고 얻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해친다” 등 반노동자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경제교과서 어디에도 노동하는 주체로서의 노동자는 없고 경영자의 보조자라는 시각을 갖도록 잘 훈련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제교육과정에 대한 경제계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관

12) 전경련 등 경제계는 7차 경제교과서 내용이 “첫째, 독극물 방류, 매점 매석, 재벌 집중, 사재기 등의 표현은 소위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경제 위기, 부와 소득의 편재, 투기, 개발 독재, 불균형 성장, 저임금 노동 등의 표현은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셋째, 지나치고 과도한 사익 추구라는 표현은 자본주의의 원리인 사익추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시장반기업적인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련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현 교육현장의 노동인권교육 부재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교육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과 노동인권 교육을 하다보면 ‘노동자’ 에 대한 편견은 어른들보다 깊지 않지만 자신들과 미래의 노동자와의 동일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는 교과과정 어디에도 우리 학생들이 노동하는 주체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다양한 사회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 교과 체계에서는 “노동3권” 이 “노동자의 신성하고 정당한 권리” 이기 이전에 “일반적인 시장경쟁질서와 사유재산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권이기 때문에 행사의 요건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음” 을 인식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노동인권 관련 내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sup>13)</sup>에 속하는 고1 「사회」 과목에서, 그리고 ‘교과 재량 활동’ 이나 ‘창의적 재량 활동’ 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량 활동은 학생의 희망보다는 교사 수급 및 입시와의 관련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량 활동을 통한 노동인권교육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즉,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고1에도 노동인권과 관련된 노동의 가치, 노동권,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3권, 사회보장권, 프라이버시권, 경영참여권 측면을 배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배울 수 있는 고 2, 3학년에도 일반계 이과 학생은 국·영·수와 과학과목 위주로 배우고, 전문계 학생은 국·영·수와 전문 과목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노동인권과 관련된 과목인 「법과 사회」 를 배울 기회는 희박하다.

또한, 일반계 문과학생이라도 고 2, 3학년 선택과목인 사회계열 10개 과목에서 노동인권과 관련된 과목인 「법과 사회」 를 배울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교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사회」 를 배우지만 주로 강의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도 주로 실업의 문제점과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노사갈등 내용만 일부 기술하고 있어 사회교육 내용에서 노동인권 내용을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을 공통기본 교육 과정의 공통교과에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 교과과정에도 포함시키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13)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초1에서 고1까지를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으로 설정함에 따라 고1까지는 계열 구분 없이 공통교과를 배우며 고 2, 3학년이 되어야 다양한 선택과목을 배울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다.



#### 4. '학습권' 과 '노동권' 의 충돌

많은 수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또한,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부모나 교사 등은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 에서하기를 바라고 있다. 부모나 교사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보니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에게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일을 겪는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사실이 알려질까 봐 그냥 참고 넘어가기 일쑤다.

이와 같이 '학습권' 과 '노동권' 의 충돌 속에 노동인권 침해 상황을 그냥 지나치게 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네트워크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2008년 1월 참교육 실천대회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 375명을 대상으로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을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교사는 20대에서 50대의 초·중고 남녀 교사들이었다.

[표5]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대응

구 분	인원(명, %)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고 한다	23(6.1)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라고 한다	105(28.0)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140(37.3)
부모님께 알리고 하는지 확인한다	142(37.9)
알바는 학생의 자유이므로 간섭하지 않는다	15(4.0)

설문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에 대한 입장" 을 묻는 질문에 '찬성' 이 258명(68.8%), '반대' 가 109명(29.1%)으로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 하겠는가" 에 대한 질문의 복수 응답 결과를 보면

[표5]와 같이 '부모님께 알리고 하는지 확인 한다' 142명(37.9%),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함께 확인 한다' 에 140명(37.3%)이 응답했다. 특히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라고한다' 에 대해서도 105명(28.0%)이 응답하여 아르바이트에 대해 찬성 입장인 경우에도 '학습권' 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담임의 아르바이트 학생 파악 정도

구 분	인원(명, %)
전혀 모른다	6(7.0)
짐작만 하고 있다	4(4.5)
대략 알고 있다	59(66.3)
장소를 포함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	20(22.5)

담임인 교사에게만 아르바이트 학생 파악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표6]과 같이 89명 중 20명(22.5%)의 교사가 '장소를 포함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나머지는 '전혀 모른다' 6명(7.0%), '짐작만 하고 있다' 4명(4.5%), '대략 알고 있다' 59명(66.3%)으로 나타나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 해당 반 학생의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아르바이트 피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대응

구 분	인원(명)
부모님께 의논하라고 한다	12(3.2)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한다	15(4.0)
들어주기만 할 뿐이다	10(2.7)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본다	244(65.1)
아직 물어 본 학생이 없다	109(29.1)

또한, "아르바이트 학생이 현장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항" 은 '저임금' (198명, 52.8%)이라고 답변했으며, "아르바이트 피해를 상담해 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에 대한 질문에는

[표7]과 같이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본다' 는 응답이 244명(65.1%)으로 높게 나타났다. '들어주기만 할 뿐이다' 10명(2.7%),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한다' 15명(4.0%), '부모님께 의논하라고 한다' 12명(3.2%)이 응답했다.



[표8]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것

구 분	인원(명)
최저임금	127(33.9)
상담센터 전화번호	90(24.0)
노동의 소중함과 자부심	171(45.6)
직장예절	20(5.3)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생이 알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표8]과 같이 ‘노동의 소중함과 자부심’이 171명(45.6%), 최저임금 127명(33.9%), 상담센터 전화번호 90명(24.0%), 직장예절 20명(5.3%)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설문대상 교사들이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을 통해 무엇보다도 노동의 소중함과 가치를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구 분	인원(명)
필요하다	361(96.3)
필요하지 않다	11(3.0)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표9]와 같이 ‘필요하다’ 361명(96.3%), ‘필요하지 않다’ 11명(3.0%)이 응답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sup>14)</sup>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4) 노동교육원이 2007년 11월 초중고 교장교감 2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학교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교장교감의 60.6%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37.2%가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을 하여 모두 97.8%가 학교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노동교육의 대상에 대하여는 ‘직업의식과 직업관’ 39.7%와 ‘노동의 가치관이나 윤리’ 35.7%로 나타났다.

[표10]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

구 분	인원(명)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143(38.1)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218(58.1)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응답률과는 달리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표10]과 같이 ‘교육 하고 있다’는 응답은 143명(38.1%)으로 나타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자료가 없어서’ 97명,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50명, ‘학생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10명, ‘학교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2명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과도한 수업부담’, ‘정확한 학생 노동인권실태를 교사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 ‘시간도 없고 아는 게 없어서’, ‘사회시간에 하지만 현실과 달라 매우 갈등’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11] 노동인권 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

구 분	인원(명)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50(13.3)
학생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10(2.7)
학교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2(0.5)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자료가 없어서	97(25.9)
기타	111(29.6)

설문 조사 결과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설문조사 대상이 전교조 소속의 교사 중 참교육 실천대회에 참여한 교사들이고 참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가 높은 교사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노동권에 대한 인정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들의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노동의 가치와 청소년 노동자



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비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교사 수는 적게 나타나고 이에 대한 이유로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자료가 없어서”,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등으로 답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교사 개인의 관심도와 역량에 의존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과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 차원의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무조건 노동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다양한 체험 확대와 학습권 보장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5. 연령차별과 성차별의 증척

청소년 노동자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성차별적인 문화로 인해 일상적인 연령차별과 성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법 위반에 따른 노동권 침해 못지않게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사장님한테 못 이겨요. 감당 안 되죠. 밥도 제때 못 먹고, 조금만 실수해도 뒤에 가서 엄청 욕을 먹어요. 미친년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냐고... (중략) 기분 나쁘죠. 근데 욕박지르고 그래도 참아야 돼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는 주문 받을 때 잘 못 들으면 니가 개야? 사람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들어? 이런 말을 반복했어요.” (사례 1)<sup>15)</sup>

〈사례 1〉과 같이 청소년 노동자들은 사업주와 고객, 동료 등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위계와 고용-피고용의 권력관계에서 문제제기 하기가 쉽지 않다. 언어폭력 뿐 아니라 신체 폭력도 다 반사로 일어난다.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뛰어나가야 하는데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색해하면서 앉아 있으니까 오빠들이 다음번에 니가 안 나가면 가둬놓고 가슴 만진다고...” (사례 2)

15) 사례는 가톨릭대학생연합회 현장실천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가 2002년 실태조사 했던 “청소년 노동 실태 보고서”에서 인용. 이하 동일.

“어리게 보이거나 순진하게 생긴 애는 안 써줘요... 여자 애들은 얼굴만 예쁘면 되잖아요.” (사례 3)

〈사례 2〉, 〈사례 3〉과 같이 성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우리사회의 루키즘(lookism, 외모지상주의)과 직장 내 성차별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노동인권 침해 상황에 이중, 삼중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상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사업주와 동료 뿐 아니라 고객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는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탈학교 하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이 주유소,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성희롱 뿐 아니라 성매매 등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Ⅲ. 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실천

### 1.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청소년 노동권 실태조사와 법·제도 개선 등 활동<sup>16)</sup>

1990년대 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들이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청소년의 노동경험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이들은 현재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노동은 학교 중도탈락이나 문제행동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성이나 직업의식 등에서 긍정적 기제로의 가능성을 찾고자 탐색적 시도(김예성, 2002)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소년을 노동주체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YMCA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조사와 2000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노동권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

16) 제한된 자료와 현실 파악으로 인해 그간의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라며 각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토론회와 워크숍 과정에서 직접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였다. 그리고 YMCA는 이슈화와 함께 2001년부터는 “일하는 아이들의 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로 교육과 상담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에서는 조한혜정 교수 주도로 “10대 아르바이트 현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소년 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냈으며, 이를 계기로 ‘하자센터’ 설립을 통해 10대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은 2002년 ‘힘내라! 알바’ 알바권리 찾기 캠페인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노동의 실태를 조사<sup>17)</sup>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연대는 토론회에서 “청소년 관련법이 청소년노동의 문제를 근로기준의 준수와 특별보호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으며, 근로의 권리보장 및 근로의 기회확대라는 적극적인 측면과 근로와 교육의 조화라는 측면 등은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같은 해, “청소년노동 관련 법률 개정의 방향” 토론회를 열어 근기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성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적용’을 규정하여 청소년 노동자의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최저임금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여 이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는 2002년 11월 ‘노동자의 벗’ 과정에 참여했던 수습 노동자들이 전교조와 함께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노동자에게 노동법적 권리와 노동인권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가톨릭대학생연합회(2003)는 청소년노동자를 심층 면접하여 조사 보고서를 내고 노동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후속 활동으로는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자원활동가,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인노무사 등이 주축이 되어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17) 참여연대는 “청소년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2002)에서 “행동하는 젊음 ‘와’ ”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사회인권팀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캠페인 진행 당시 청소년 노동의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수도권권의 중고등학생 110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2.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활동 경과<sup>18)</sup>

### (1)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 출간과 노동인권교육

네트워크는 2004년 3월 2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 1차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출판을 결정하였다. 이후 2개월간 ‘불안정노동과 인권, ‘불안정노동으로서의 청소년 노동(1)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 집중 사업장 불안정노동 실태’, ‘청소년 노동 일반 실태(2) : 실업계 현장실습’, ‘노동법의 기본 체계와 주요 내용’, ‘노동감시와 노동통제 전반과 대응지침’, ‘직장 내 성희롱’,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향’, ‘관련 법·제도 개정과 투쟁 방향(2)’이라는 제목으로 9차례 세미나를 진행하고 2004년 5월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읽을거리 집필을 시작하였다.

2005년 7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길잡이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이하 「똑똑」)를 출간한 후 2005년 8월 19일~20일 「똑똑」 발간 기념 “교사교육활동가를 위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이후 수차례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 (2) 전문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와 “정상화 방안” 도출

네트워크는 워크숍을 통한 교육뿐 아니라 전문계고의 현장실습 문제에도 주목하였다. 전문계고의 현장실습은 간접고용 형태의 실습생 파견이 증가하면서 2중, 3중의 문제점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네트워크는 현장실습 문제점에 대한 실태 고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압박과 강제, 현장실습 폐지 및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현장실습제도 관련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동부 앞 규탄

18) 네트워크의 활동 경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네트워크 내부 자료를 인용 요약하였으며 따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고 현장실습 간접고용 실태 보고 기자회견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 현장실습 방치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2006년 2월, 과천종합청사) 실습생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기자 회견과 항의 방문 실시, 현장실습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그 결과로 2006년 5월 교육부로 부터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실습시기를 3학년 2학기로 늦춘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표12]와 같이 교육부의 “정상화방안” 발표 이후 청소년개발원이 2006년 전문계고 졸업생 2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도 2003년 전 교조실업교육위원회의 ‘현장실습 실태조사’ 및 2005년 네트워크의 ‘현장

[표12] 학교계열별 현장실습현황

구분	농업 및 수산해양		상업 및 가사실업		공업		
	빈도	%	빈도	%	빈도	%	
현장실습 참여여부	미참여	47	52.2	548	59.3	266	40.3
	참여	43	47.8	376	40.7	394	59.7
현장실습 중도탈락여부	완료	35	81.4	308	81.9	307	77.9
	탈락	8	18.6	68	18.1	87	22.1
현장실습 참여기간	1개월이하	19	45.2	113	30.4	40	10.4
	1개월-3개월	7	16.7	138	37.1	124	32.1
	3개월-5개월	4	9.5	69	18.5	82	21.2
	5개월-6개월	0	0.0	15	4.0	34	8.8
	6개월초과	12	28.6	37	9.9	106	27.5
현장실습 일평균근로시간	7시간이하	13	31.0	81	21.7	42	10.7
	7시간-8시간	12	28.6	135	36.1	119	30.4
	8시간초과	17	40.5	158	42.2	230	58.8
현장실습참여 사업체규모	중소기업	39	90.7	286	76.5	300	76.3
	대규모	4	9.3	88	23.5	93	23.7
현장실습수당 최저임금여부	최저임금미만	35	81.4	197	53.4	166	43.7
	최저임금이상	8	18.6	172	46.6	214	56.3
현장실습내용 전공일치도	일치	17	39.5	257	68.4	190	48.3
	불일치	26	60.5	119	31.6	203	51.7

※자료 출처: 청소년개발원, 하인호(2007)에서 재인용

즉, 조사결과는 현장실습이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전문계고 학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한 관리 부재와 현장실습 업체의 선정 기준 미달,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현장실습 진행,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전혀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 법적 근로시간 초과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장실습생들의 교육관·학습관·건강권은 정상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어 교육부 정상화 방안 발표 이전이나 이후나 현장실습 시기가 뒤로 늦춰진 것 외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3. 노동인권 '감수성' 키우는 노동인권교육 사례

#### (1) 노동인권 교육 활동가 양성과 각 단위의 다양한 실천

노동인권교육관련 큰 흐름은 네트워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 노동지침의 '근로인지교육', 한국노동교육원의 '예비근로자 노동교육'의 근로기준법 위주의 교육이다. 네트워크에서는 「똑똑」을 발간한 후, 교사와 활동가 양성, 학교 현장 및 지역에서의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진보 진영 내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다양한 실천들을 진행하였다.

특히 2006년 5월 1일 전교조에서 최초로 실시한 노동절 계기 수업 (교재는 네트워크에서 발간한 「똑똑」)은 비록 전면적 실천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조그만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이하 노노모)에서는 2006년과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지원 사업인 「전문계 고등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수도권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교육부 협조를 받아 교육청에서 안내공문을 전문계 고등학교에 발송함에 따라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였으며, 2006년 교육부 '현장실습정상화방안' 발표와 맞물려 노동인권교육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대표 단병호)에서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한 '국회의원, 전문계 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사 되다'는 국회의원이 직접 전문계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노동인권 교육을 한 첫 사례이다. 비록 전국 7개 전문계 고교에서만 실시한 한계는 있지만 예비노동자로서 바라는 점과 개선 방안을 듣고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학교 현장과 지역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확산 등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다수 노동자 출신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다양한 정치적 실천들은 전문계 고등학교 예비노동자 문제를 새로운 의제로 부상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6년 1월 강원지부 참실위 교사대상 「노동인권 직무연수」를 기획하고 네트워크 활동가를 강사로 정하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방해로 실시하지 못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서울 모 여상에서 수능 이후 취업 전 사전교육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실업부장 요청을 받아 네트워크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기로 하였으나,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시킬 우려' 운운하여 교육이 무산되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주관한 워크숍에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주최 대학생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에서는 고양시위원회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학교를 통해 노동인권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 (2) 정기 워크숍 진행과 전교조 직무연수 등

네트워크는 2005년~2007년 매년 정기 워크숍을 진행하여 강사단을 양성하고 지역네트워크 결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공유에 주력하고 있다. 또, 노동인권교육 지역간담회를 전교조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 광주전남에 이어 2006년 대전충청지역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대전지역은 간담회 실시 이후에 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모임을 결성하고 대전지역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경기 고양 중등지회에서 참실대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서울 공립 중등남부지회에서, 2006년에는 지회 참실 한마당으로, 2007년에는 인권 직무연수의 한 과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충남지부와 대구지부에서 지부참실대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인천지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부차원의 노동인권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부천지회가 지회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인권교사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본부 실업교육위원회가 2007년 여름 방학 중 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분회차원에서는 인천 문학정보고 분회가 2006년 교사 대상 노동인권교육워크숍을 실시하고, 워크숍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화여상 분회가 2007년 교사대상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교조 안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은 아직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심 있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 IV. 청소년 노동권, 새로운 접근을 위한 과제 : 노동인권교육 '후(後)'

##### 1. 정규 교과 과정 등을 통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네트워크가 진행하고 있는 참여형 노동인권교육은 소규모로 여러 차례 실시할 때 효과적이다. 진행자와 참가자의 구분 없이 서로 어우러져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유대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담임교사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담당 교사가 노동인권 감수성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노동관련법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좋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그 내용을 담거나 교육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대규모의 일회성, 단기 교육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노동법 지식 전달 정도에 머물게 되어 본래 취지인 노동인권 감수성을 키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 상황에서는 뜻있는 교사들의 개별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의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 확보의 어려움과 마땅한 교재 부재 등으로 교사 개인의 의지에만 기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도 독일, 프랑스와 같이 정규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교육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2002년 참교육 실천 강령을 선포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 한다"이지만 경제교과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나 실업위원회 중심의 노동인권교육이 그 실천의 전부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권 존중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교과내용과 교과과정 개편에 전교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문계고 중심의 노동인권교육을 벗어나 초·중고에서 체계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노동교육 과정의 개편과 아울러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주체에 대한 연수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지역 노동인권네트워크의 필요성

인천지역의 경우 문학정보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워크숍에 참여했던 교사가 중심이 되어 고2, 고3 전체 학생들과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즉,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문학정보고등학교에서 실업부 주관으로 '전문계 고3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을 진행하고,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2학년 대상으로 동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활동(문학정보고)



▲ '동그라미의 비밀' 활동(문학정보고)

이 때 교육 진행은 2006년 10월에 실시한 '교사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워크숍'에 참여한 교사가 중심이 되어 1학년 당 2시간씩 진행하였다. 워크숍 종료 후에는 노동인권교육 진행 및 참관을 했던 교사 14명이 모여 평가회를 실시하였고 2007년 전 학년 대상 노동인권교육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과연구회에 노동인권교과연구회를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또한, [표13]과 같이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워크숍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교육기관 워크숍, 전교조 인천지부 워크숍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이 양성되었다. 강사단은 청소년 단체의 전문계 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과 천주교노동사목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단위 학교에서는 처음 실시된 문학정보고등학교 교사대상 노동인권워크숍, 선화여상 교사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워크숍 등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천지역 네트워크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 때 교육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지역 내 다른 학교의 교사 워크숍에 강사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노무법인에서는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표13] 인천지역의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사례

구분	시기	대상	기타
청소년 노동인권 지도자 워크숍	2006.4.	'노동자교육기관',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의 단체 활동가와 교사, 25명 참가	네트워크 진행
천주교 노동사목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2006.5.	중3~고3학생, 30여명 참가	네트워크 정기 워크숍 참가했던 가톨릭 청년 연대 회원들이 교육 진행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젝트	2006.7.~9.	인천광역시 청소년	인천광역시 지원으로 교재 발간, 노동인권 교육 진행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워크숍	2006.9.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 17명 참가	네트워크와 인천지부 참실 담당자 공동 진행
문학정보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워크숍	2006.10	문학정보고등학교 교사, 17명 참가	학교운영비 예산 배정
문학정보고등학교 전문계 고3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2006.11.	문학정보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전체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워크숍' 참가 교사 진행, 학교운영비 예산 배정
선화여상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2007.6.	선화여상 교사, 20여명 참가	문학정보고 워크숍 참가 교사 진행

노동인권교육을 마치고 나면 상담전화를 많이 받게 된다. 주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어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질문인데 법 규정을 설명하고 구제 방법을 설명해 주지만 현실에서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마다 특성이 있고,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노동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개별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법적인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즉, 노동법 위반이나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대응을 일상화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상담체계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아르바이트 할 때 필요한 노동인권 교육 등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와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지만 청소년 고용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1994년 이전에는 기업에서 청소년 고용을 할 경우 사회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을 면제 해 주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 지역사회 공동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16세~21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경험과 계획을 돕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등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 외에도 1994년 이후에는 각 사회 부분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여름 노동 프로그램'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14세~16세의 모든 청소년들과 방학 중에 있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 탐구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게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가 정부 차원과 지역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위스나 스웨덴의 경우에도 청소년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와 '지역 일자리' 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당한 수준의 고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노동 보호 지방위원회, 감독관청 내 청소년노동 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화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각 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 청소년 단체, 교사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지역사회단체 고유의 정책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청소년 노동 정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현황에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3. 시민사회·노동운동 진영의 적극적인 개입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부재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시민사회·노동운동 진영에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이렇다할만한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반성할 일이다. 몇몇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한시적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이슈화 하거나 캠페인 진행 정도에 머물렀을 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대응 방식도 청소년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발언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노력은 없었다.

IMF 이후 빠르게 진행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급속하게 확대된 비정규직,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불안정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지지부진하고 사안중심의 제한적인 연대만이 있을 뿐이다. 더더군다나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인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문제 역시 노동운동 진영이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연대하거나 대응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현실이다. 세대 간의 불균형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실에서 노동운동진영이 비정규직 문제에 속수무책인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노동자와의 연대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새로운 비전 없이는 노동운동의 전망은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접근 방식은 노동인권 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한 이슈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노동인권 침해 구제, 노동인권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 편입,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 노동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노동운동 진영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 개입 방식과 조직방식은 기존의 운동방식과는 다른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가톨릭대학생연합회 현장실천위원회, 2002, “청소년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김예성, 2002, “학교청소년의 시간제노동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노동건강연대, 2007,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위원회·경찰청, 2005,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문은영, 2003, “한국노동시장에서 청소년 시간제 취업의 문제점과 대책”, 숙명여자 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이경상 외, 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한국청소년 개발원

최순영의원실 외, 2007, “경제교과서를 계기로 본 교육실태와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정은주, 2003, “패스트푸드점에 고용된 청소년 노동 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조한혜정, 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또하나의문화

참교육 연구소, 2004,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 방안 연구, 전교조

참여연대, 2002, “청소년노동의 실태와 문제 토론회” 토론회

\_\_\_\_\_, 2002, “청소년노동 관련법률 개정의 방향” 토론회

하인호, 2007,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함께 하실래요?”, 전교조인천지부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자료집

하인호 외, 2004,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 방안 연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한국노동교육원, 2003, 「선진 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교육권·학습권·건강권 관점 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발표

## 청소년 노동자들

패스트푸드점 사례 ; 또 또

음식점 서빙 사례 : 문학정보고 학생



## 왜 하필 M사에서 일하냐고?

또또

그냥 내 알바 경험을 쭉~욱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내가 처음으로 알바를 해봤던 건 작년 7월 쯤. 주유소 알바였고 시급은 그때 당시 최저임금 이었던 3480원에, 조금이라도 형식을 갖춘 근로계약서 없이, 산재보험을 들었다는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알바를 시작했다. 정~말 정말 힘들었다.

끝도 없이 밀려들어오는 차에(실 시간이 정말 없었다.),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구분해야한다는 것과 결제하는 것에 있어서 실수하면 며칠을 꼬박 일한 돈도 날라갈 수 있다는 압박감, 실수했을 때에 신발신발거리며 마구 욕을 퍼부어대는 주임, 실수하고 주임에게 욕을 먹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다른 알바생들, 아침 일찍 출근에 하루 8~9시간 근무하면서 그나마 편하게 있을 수 있던 시간은 밥먹는 15분~20분 정도뿐인, 마지막으로 정말 제대로 찌는 기름 냄새 때문이었다.

일주일 쯤 되던 날, 항상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그날만은 점심정도쯤에 출근했는데(물론 전날 허락까지 받았었다) 네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여기서 네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고 등등등등의 이유 때문에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고 내게 마구 욕을 퍼부었던 주임 외의 다른 주임이 말했다.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고 박탈감이 느껴졌고 속상했던지라, 그날 까지만 하라던 일도 안하고 그냥 나와 버렸다.

아, 물론 가장 중요한 임금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실수한걸 빼면 2만 5천원이란다-\_-^ 원래 받아야 할 돈은 주휴수당에 초과수당까지 계산하면 20만원이 넘었다. 이런 사기꾼 놈들.. 아 다시 생각하니깐 또 열 받는다.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빨리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내야겠다.(하여간 귀차니즘이 문제다. 아무리그래도 내 임금문제인데=\_=;)

두 번째 알바는 전단지 알바였는데, 대략 '중고차 삽니다/팝니다' '중고차 무이자할부 판매합니다' 라는 두 종류의 전단을 차에 꽂거나 마구 뿌리고 다니는 일이었고, 시급은 처음에는 5천원 이었다가 시작한지 몇 주 되



고나서 내가 전단지를 돌리는 동네의 팀장이 되어서 7천원까지 올랐었다. 아마 시급 7천원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부르주아틱함을 느끼셨을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 무거운 전단지를 항상 내가 챙겨가야만 했고, 비가 오거나 고용자들이 사정이 생기면 무조건 일을 할 수 없었고(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주일에 평균 3~4만원밖에 벌지 못했었다.) 팀원 분들의 스케줄에 대한 불만과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는 고용자들 사이에서 여러 번 마음고생을 했어야만 했다.

그래도 폭력교사 앞에서 조용히 엎드려있는 학생처럼 하고 싶은 말 억누르며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일했던 팀원 분들이 다 해고당하고 내 시급은 7천원에서 5천원으로 강등 당했다.-\_-... 이유인 즉슨, 뭐 자기들이 아끼는 어떤 아저씨가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전담하신다는 거다. 다 좋은데 왜 팀원들을 그렇게 함부로 잘라버렸으며, 그런 식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하여 마구 따졌고, 결국은 전화로 싸우다가 그만둔다고 하고 끝내버렸다.

세 번째 알바는 지금 M사 패스트푸드점 알바다. M사 알바는 어떻냐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해왔던 알바들중에서는 최고다. 가끔 주위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서 일하는 거야?” “또또~ 실망이야.” 라고 얘기하곤 했지만... M사도 분명 거지같은 곳이지만 청소년들이 알바하기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다. 전에 있던 매장에서는 임금지급이 안된 부분들이 많고 스케줄 신청도 자유롭게 되지 않아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 역시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매장은 임금지급도 잘 되고 있고(주휴수당도 법적 한도만큼은 어기지 않고 잘 나온다), 휴식시간도 잘 지켜지고, 스케줄신청도 새벽이외에는 웬만하면 원하는 데로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오, M사 괜찮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없길 바란다. 일단, 버거 안에 쓸 고기를 굽고 튀기는 데에 있어서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심히 크고, 조금의 실수라도 발각되면 여지없이 욕박을 지르곤 한다.(당연히 매니저들이 알바 생들에게. 특히 점장이 심하다), 고생은 매니저들과 비슷하게 하는데 나는 많아봤자 60만원을 넘지 못하고 가장 싫은 건, 일 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간의 경쟁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작년 개정된 비정규직 법에 따르면 분명 2년 이상 일했을 시에 반드시 정

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년 이상 일한 어떤 분은 아직 까지도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묘하게 ‘11개월 근로계약’ 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분명 있던 일들이 많았지만, 일단 쓰는 건 이정도로 쓸까 한다. 아, 정말 착취당하고 싶지 않다ㅠ



## 음식점 아르바이트 사례

문학정보고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정보고등학교 3학년졸업생입니다. 제가 알바를 하다가 생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곳에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 알바를 하기 시작한건 3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வீ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면접을 보러갔을 때 그 가게의 종업원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시급 4,300원에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하기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정해진 날부터 나갔고 일을 배우기에만 집중하느라 시급에 대해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 알바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급에 대한얘길 꺼내기가 쉽지 않았고, 혹시나 버릇이 없어 보일까 봐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날로 정해서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첫 월급을 받기로 한 날에 미리 계산해둔 돈과 사장님께서 주신 금액이 달라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우리가게는 3,5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4,300원으로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후회도 되고, 속았단 생각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면접 때, 시급에 대해 말씀해주신 이모계선 당시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속이상하고 분해서 학교선생님께서 노무사님과 알고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학교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번호를 알려주셨을 땐, 약간 거리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한 거니까 노무사님께 직접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힘입어서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신 정보를 문서로 작성 했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들킴하게 말씀해주신 덕에 자신 있

사례

게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장님은 그걸 보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며칠 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4,300원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는 줄 수 없고 3,800원으로 계산 한 금액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당시엔 정말 학생이란 신분이 싫었고 청소년을 얕보고 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습니다.

이번일로 다시 알바를 하기도 싫어지고 돈이 참 더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돈 때문에 한순간에 사장님의 말투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알바를 이렇게 안 좋게 끝냈지만, 후배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근로계약서부터 작성 한 뒤에 알바를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토론

## 청소년 노동의 현주소와 대응과제

조 돈 문 (가톨릭대 사회학부 교수 )

김 기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 호 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 청소년 노동에 대한 토론

조 돈 문 (가톨릭대 사회학부 교수)



## ‘청소년 노동의 현주소와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 들어가며

청소년 노동문제는 학생신분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청소년 노동문제가 사회적,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며 이번 발표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도 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적인 자료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2. 청소년 노동 실태에 대한 보완

#### 2-1. 학생들의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

기존 아르바이트 참여율에 대한 조사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들 중 30-40%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률이나 실업률을 계산할 때처럼 지난 1주일간, 혹은 한 달 간의 근로 경험에 대해 묻거나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 지난 1년간의 근로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단위: %, 명)

구분	중2(2003)	중3(2004)	고1(2005)	고2(2006)
전체	14.7(428)	11.4(333)	11.9(345)	14.9(433)
남자	14.5(210)	10.5(152)	11.3(164)	14.9(217)
여자	15.0(218)	12.4(181)	12.4(181)	14.8(216)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패널조사」, 2003-2006  
 주: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시기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수임

다행히 청소년패널조사(KYPS)에서는 지난 1년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근로소득, 참여이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표 1>은 지난 1년간의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10명 중 1명 꼴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존의 누적분포(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비율의 분포)를 이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30%선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4년간 아르바이트 참여 지속 여부 (단위: 명, %)

4년간 경험 여부	남자	여자	전체
한 적 없음	959(66.0)	955(65.6)	1914(65.9)
1년	301(20.8)	293(20.1)	594(20.4)
2년	135(9.3)	134(9.2)	269(9.3)
3년	48(3.3)	57(3.9)	105(3.6)
4년	7(0.5)	16(1.1)	23(0.8)
계	1450	1455	2905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패널조사」, 2003-2006  
 주: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그리고 이 발표문에는 아르바이트 참여 동기 부분이 빠져 있는데 KYPS를 통해 살펴보면 생계형(2-6%)이나 취업경험(3-8%)보다는 용돈 부족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시기별 아르바이트 이유 (단위: 명, %)

구분	이유	중 2	중 3	고 1	고 2
전체	용돈이 부족해서	212(49.5)	189(56.9)	189(54.8)	229(52.9)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16(3.7)	16(4.8)	28(8.1)	37(8.5)
	여가시간 활용	106(24.8)	62(18.7)	65(18.8)	81(18.7)
	주위의 권유	64(15.0)	39(11.7)	35(10.1)	32(7.4)
	생활비를 벌기 위해	9(2.1)	9(2.7)	14(4.1)	30(6.9)
	기타	21(4.9)	17(5.1)	14(4.1)	24(5.5)
계		428	332	345	433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패널조사」, 2003-2006

2-2. 청소년 취업자의 실태

청소년 중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청소년 시기(15-24세)에 취업을 하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발표문에는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청소년 취업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5~24세 청소년 취업자는 162만 7천명으로 2004년(198만 명)에 비해 35만 3천명 감소하였으며 1995년(258만 5천명)에 비해 122만 8천명이나 감소하였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180만 7천명)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0.0%로 2004년(89.6%)에 비해 0.4%p 상승했으나 1995년(93.7%)과 비교해보면 3.7%p나 낮은 수치이다. 전체 취업자(2,315만 1천명)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0%로 나타나 2004년(8.8%)에 비해 1.8%p 낮아졌다. 1995년과 비교해보면,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은 12.7%에서 7.0%로 5.7%p나 낮아진 결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대학 진학률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2006년 청소년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직(43만 3천명)이 2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무직(41만 2천명)이 25.3%,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33만 4천명)이 20.5%, 전문·기술·행정관리직(38만 9천명)이 23.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사무직의 비율(전체:청소년=14.2%:25.3%)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림어업직의 비율(전체:청소년=7.2%:0.6%)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별 전체 취업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무직이 25.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천원, %)

구 분	임 금 수 준		증 감 륜	
	19세 이하	20~24세	19세 이하	20~24세
2001	792	877	10.8	5.3
2002	874	978	10.4	11.5
2003	903	1,047	3.3	7.1
2004	973	1,112	7.8	6.2
2005	1,059	1,200	8.8	7.9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청소년 고용실태에 대해서는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4>는 지난 5년간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청소년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액 및 초과급여 기준으로 19세 이하가 1,059,000원으로 전년대비 8.8%p 상승하였고, 20~24세는 1,200,000원으로 전년대비 7.9%p 상승하였다. 이 조사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조사 대상이다. 이 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세자영업체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고용실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3. 노동인권교육 '외(外)'

이 발표문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대응방향들, 곧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지역의 노동인권네트워크를 확충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발표문은 여전히 청소년들을 보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시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일이나 직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직업체험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미래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얻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가치나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Hamilton and Stewart, 1980). 심지어 아르바이트 경

험이 학업성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D'Amico and Baker, 1984), 이는 좋은 성적이 좋은 직업을 얻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일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 학업 성적을 높이려는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이와 함께 영미권 국가들의 부모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과정으로 자발적 경제 참여를 권장하는 문화가 있으며 영미권 국가에서 사회계층간의 차이 없이 광범위하게 아르바이트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부모들의 허용 혹은 묵인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제 취업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가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Singh and Ozturk, 2000: 67).

이와 관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용돈벌이에 있다. 청소년들이 경제적 목적에 의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듯이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저임금 단순노동에, 교체가 용이하고 비교적 고분고분한 인력으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도 발표문에 제시되어 있듯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인 직업체험의 장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의 주체로 설 수 있게끔 아르바이트를 사회참여의 하나이며 경제체험의 공감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중요한 사회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르바이트 업체는 학생들을 경제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고 학부모나 교사는 아르바이트를 학생들과 시장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직업체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나 시민단체도 보호의 틀에서 벗어나 아르바이트가 괜찮은 사회경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학생의 교육적 고용 프로그램(SEE: Student Educational Employment)은 미국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학생대상의 고용창출제도 중의 하나인데, 이는 미래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능력 있는 학생들을 찾기 위해 학교 수업과 일(school and work)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학생들의 성과에 따라 나중에 학생인턴제도나 장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종래의 미국 내 학생고용 프로그램들(e.g., Cooperative Education, Federal Junior Fellowship, Stay-in-School, Summer Aids Program 등)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서, 학생들이 참여한 일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rewarding)이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고등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미국령 소속의 시민



으로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자, 미국 이민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라면, 어떤 학위과정의 학생이든지 모두 가능하다. 다만 최소한 시간제(half-time)수업 이상의 과정에 등록되어 학적을 보유하여야 하고, 연방법 혹은 주정부 법에서 정해놓은 최소 취업연령(이는 주정부마다 서로 다르다)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E는 '임시고용제(student temporary employment)'와 '직업경험제(student career experience)'로 나누어진다. 임시고용제는 학생의 전공이 무엇이건 상관하지 않으며, 잡역에서부터 직책이 있는 일거리에도 종사하는데,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학생 파트타임 고용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직업경험제는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재학 중 일정기간 동안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참가하는 학생 자신과 학교, 그리고 채용하는 연방정부 기구 사이에 일정한 약정이 맺어져야 한다. 학교가 이 제도에 실질적으로 간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업과 일을 모두 마치게 되어 직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정식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이다. 학생들은 SEE 프로그램에 연중 언제라도 참여가 가능한데,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 자신의 학사일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학생들의 건전한 아르바이트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해 볼 수 있다.

#### 4. 새로운 사각지대: 대학생 아르바이트

마지막으로 이 발표문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빠져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대학생들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9-24세)에 해당하지만 스스로를 청소년으로 보는 대학생들은 없다. 그렇다고 취업, 결혼, 분가 등 성인기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은 경계인이다.

아르바이트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대상 밖인데 실제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한 인터넷 대출 사기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매년 10%의 인상률로 천 만 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1,269명에게 "등록금으로 인한 휴학 경험 여부"를 묻자 15.0%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정부보 증 학자금 대출이 최근 확대되었으나 대출 이자율이 6~7%에 이르는 현실에서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청소년 노동에 대한 토론

전 호 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1. 아르바이트 욕구와 경험에 대해서는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의 청년/여성 분과에서 발간한 <십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연구>를 보면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인용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의식조사」(YMCA 청소년 센터, 1995)에 따르면, 서울시내 남녀 고등학생 1,014명을 대상으로 하여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인문계생 83.2%, 실업계생 90.1%로 나타났고, 1997년 「청소년 여름방학 여가생활 실태조사」(서울 YMCA)에서는 고등학생의 84.7%가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대답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욕구 증대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10대 아르바이트가 활성화되는 배경에는 사회적 변화와 소비 사회적 측면을 우회하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아르바이트의 실제 경험에 있어서 통계치 들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최근의 조사(서울 YWCA 소비자 보호세미나의 발표)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901명 중 40.8%인 368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십대남성(44.7%)이 십대여성(37.0%)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이 조사는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에 해당하지만, 어쨌든 실제 현상으로도 아르바이트가 10대의 사회적 현상임을 볼 수는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욕구와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3. 10대들이 일하는 동기는 단일하지 않다. 대부분은 용돈벌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외에도 생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학습과 경험의 차원에 중심을 두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사실 이러한 일하는 동기는 계급과 관심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동기를 갖든 10대의 경우에는 사회를 접하는 초기 경험이고 그렇기에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구체적 계기가 된다. 이 점에서 저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둘러싼 노동 보호의 차원뿐 아니라 사회를 경험하는 초기 인식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4. 10대 노동에 있어 동기의 분할도 있지만 좀 더 주요한 측면은 대학생과 중고생/탈학교 생이라는 구분이 아닐까 한다. 이런 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의 현실 파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단적인 예가 대학생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의 경우 10대를 고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 직종은 주변화된 직종, 그리고 안정성이 없는 직종, 법적 제도적인 보호 장치 외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10대 사이에서 일부 패스트푸드점이 아주 좋은 일자리에 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단지, 주유소, 서빙 등과 관련된 일들에 종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5. 그렇기에 청소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조건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작업 현장에서 맺는 착취적인 관계가 대다수 10대 노동력이 이 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노동시장에 편입된 저소득층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 필요성은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을 둘러싼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주 필요한 논의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아르바이트를 비공식적 영역에 방치하고 있는데서 벗어나 제도의 틀 내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 권리의 많은 문제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비롯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 등에서 학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6. 문제 차원을 확대해보면 아르바이트가 지금 교육과 사회체험이라는 맥락에서 제기되지만, 그 의미는 일반적인 진술과는 달리 문제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내가 10대들과 이야기해 본 바에 의하면 10대 자체에게서도 아르바이트의 의미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아이들이 소비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행위가 바로 아르바이트이고, 좀 더 비판적으로 말하면 소비 사회가 요구하는 '소비 주체'로 자신을 형성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경험을 통해서



배워라' 는 타당한 이야기지만 '경험은 하지만 배울 수는 없는 조건' 은 아르바이트 논의와 현실 사이의 모순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7.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0대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의미의 내포가 매우 문제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대개 '군대 경험' 과 비슷하다. 아르바이트는 "뻥 세계 일한 경험이고 이 뻥센 노동을 통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얻는 것이 고작이다. 사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식의 체험이 노동 현실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거리감을 소멸시키는 경험이라는 점이다. "현실은 장난 아니다" 라는 식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자신의 태도 문제로 환원하게 하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사회 논리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8. 이런 차원에서 경험 차원의 노동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획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현실을 개선할 의지와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노동 경험은 순응하는 주체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여러 불공정한 사례를 그냥 참고 넘기게 하는 식으로 작용한다. 분명히 사회에서 자신을 교육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9. 이미 전제한 것처럼 청소년 노동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검토해 보면 청소년 노동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설정과 청소년의 사회 경험 확대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각각의 시선은 준거하고 있는 현실이 차별적이고, 꼭 분리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논의 수준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차원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는 문제다. 사회가 이 각각의 문제 차원에 대해 차별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필요성에서부터 학습권과 노동권이 결합될 수 있는 기획의 필요성까지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사회 자체가 10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부터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사회가 10대를 키운다는 적극적인 인식 전환의 노력까지 다양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십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갖는 맥락을 좀 더 심각하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사회 인식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일자리 마련이라는 차원과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노동권과 학습권의 결합이라는 맥락에서 시도되는 지원 시스템의 차이가 적지 않다. 나는 후자의 입장에서 사회자원을 학습화하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턴제, 창업교육을 어떻게 사고할지에 관심이 많다. 청소년의 노동과 교육을 분리시키는 것은 현재의 제도 속에서 명확하다. 사회적 계층화 논리로 작용하는 이런 식의 분리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일을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은 현실에서 명확히 존재한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구분의 논리는 적극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인식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11. 10대의 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 즉 사회적 지원 체계에서 핵심적인 것은 경험과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다. 노동 권리와 노동 의무, 노동윤리와 사회적 윤리 등의 문제를 과정 속에서 체험하면서 일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지 않는다면 법적, 제도적 개선이 있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10대 노동의 문제가 시민사회의 수준과 관련되는 측면도 적지 않은 것이고, 주체의 태도 문제로 환원할 것은 아니지만 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들 때 새로운 노동 주체를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12. 도식화하자면 노동권 논의를 사회의제화하는 노력이 한쪽에 있다면, 일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원체계의 문제가 한쪽에 있다. 나는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가 사회 의제화하는 기능을 하면서, 이 때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해가는 공론화 기능을 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정부, 기업, 공공단체가 청소년의 일과 관련한 좋은 모델을 개발해가고, 이 과정에서 노동의 권리와 의미, 어쩌면 윤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획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 2 부 워크숍

### 청소년 노동인권 확보, 무엇을 어떻게 할 것 인가?

정 건 희(군산YMCA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김 진 역(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천 희 완(전교조 참교육실장)

정 경 화(민주노동당 고양시 위원회 위원장)

따 이 루(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목적

정건희<sup>1)</sup> 관장 (군산YMCA청소년문화의집)

### 시간의 역사

시간은 흐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훗날 역사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역사전문가들이라 칭하는 학자들마다 그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다. 랑케는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콜링우드<sup>2)</sup>는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는 견해라 했으며 이 에치 카르(E. H. Carr)는 과거의 사건을 정확히 기술하고 오늘의 삶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라 이야기 하며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강조한다.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개인적인 무식함으로 확실히 정의하지 못한다.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건 학자들의 해석이나 일반시민들의 역사인식이 나름의 주체적 해석이 아닌 소수의 부류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기성을 찾는데 역사를 왜곡하여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크게 왜곡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해석과 함께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나 그 역사의 중심에서 실제 사건을 몸으로 체험하고 함께 했던 당사자라면 간접적 환경을 보고 해석해 나가는 주변인에 비해 자기 자신의 주체적 입장에서의 고민으로 더욱 정확한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 경험과 활동의 중심에서 주체를 이야기 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일’에 대한 내용을 거론하기 전 뜬금없는 역사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 동안의 짧은 경험에서 알게 된 건 현재의 우리 아이들<sup>2)</sup>의 주체적 입장에서 ‘일’을 바라보지 않으면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역사적 관점 운운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입장에서의 100% 정확한 공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 가운데에서 성인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며 느꼈던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는지 매우 부족한 하나의 시각 정도는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 [www.cyworld.com/babogh2](http://www.cyworld.com/babogh2)

2) 아이들은 청소년을 뜻한다. 언제부터인가 만나는 청소년들을 ‘우리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좋은 뜻이니 오해하지 말기를…….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현장에서 몇 가지 개인의 운동(Movement)적 사업(Social Work)과 함께 성인 입장에서의 경험으로 인한 결과의 시각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자의 경험으로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것도 '웃기는 일'<sup>3)</sup>이다. 상당수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 자기 입장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그 표현을 청소년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가끔씩 왜곡한 경험도 있는 것 같다.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표현을 개인적 잣대로 해석하고 몰고 간 경험도 있다. 아이들이 순수함으로 그런 일들이 옳다고 이야기 해준다. 내심 흐뭇해 하며 함께 하지만 결국 내 안의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한 경우도 있다. 여러 경험으로 '행복론'에 입각해 이야기를 하자면 복잡해진다. 다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이해하고자 수평적 소통을 기울이는 정도는 된 듯하다. 그 정도의 입장에서 지금껏 청소년의 '일'과 관련한 내용을 몇 가지 나열해 보고 나름의 경험을 공유한 후 그들의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개인적 시각을 밝히고자 한다.

#### 일의 시작

과거<sup>4)</sup> 서울YMCA의 진로진학 상담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다양한 상담 활동을 진행해 왔었다. 지속적으로 청소년상담을 받으면서 청소년 일 특히 아르바이트에 대한 상담이 예전에 비해 많아졌던 모양이다. 이에 2000년 해결점을 찾기 위해 "일하는 청소년 권익보호 및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넓히고자 연대 할 수 있는 지역YMCA와 소통하였다. 그 당시 필자도 군산YMCA본관 청소년부 간사로 일하고 있었던 때였으며 '일'에 대한 소중함 운운하던 때라 사업에 함께 참여했었다. 그 당시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보다는 아이들의 진로와 일의 연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실업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힘겨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소지가 있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업계 학교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공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입학하는 학교로 치부되어지며 조기취업에 대한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현재도 그러한 일들은 비밀비재하다. 지역의 상업고교를 졸업하고 경기

3) 아이들을 대변한다지만 그 대변을 통해 단체와 개인의 입장을 모하게 섞는 경우가 많다.

4) 벌써 수년전이다. 현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

지역의 대기업 반도체 공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계공고 졸업하고 산업체의 3D업종의 보조 역할로 전략해 단기적 고용 이상의 효과는 보이고 있는 않은 게 현실이다. 대다수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인데 이 또한 실업계 고교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문제로 대두된다. 인문계 청소년들도 성적에 맞추어 움직이고 마지못해 대학에 입학<sup>5)</sup>하는 경우도 많다. 실업계 청소년들은 더욱 심하다. 시간을 별 요양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노동력 시장에 보조직업군 정도의 역할을 맡으며 단기고용직에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청년 때의 경우도 별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들의 노동력에 대한 욕구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하여 음식점, 전단지 배포, 주유소 등 다양하다.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위치권만을 강요하며 아르바이트를 학칙에 금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았다.

이에 민간차원에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사업<sup>6)</sup>이 시작되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일반적 모습

2000년 10월경에 조사한 실태조사<sup>7)</sup> 내용 중 중요 내용을 요약해 본다.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서는, 최소 연령은 16세, 최대 연령은 19세, 평균 연령은 17.62세로 나타남.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8세가 6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7세가 30.8%를 차지하였으며, 16세와 19세는 각각 4.8%와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용돈 지출 액수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서는 평균 1주일 용돈 지출액수는 16,000원 정도였다. 그러나 최소치가 500원, 최대치가 150,000원으로 나타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용돈 지출액수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주일 용돈 액수의 분포를 보면 5,000원 이하

5) 근래 지방대는 상당수 미달이다.

6) 아마 사업계획서의 기본 목적의 골격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7)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모색, 군산YMCA청소년부, 2000



가 31.4%, 6,000원에서 10,000원 이하가 32.0%로 분석되어, 대다수 학생들의 일주일 용돈액수는 10,000원 이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용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타서 쓰는 비율은 93.7%,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마련하는 경우는 5.0%, 지출 차액을 통해 마련하는 경우는 12.9%, 친인척이나 형제로부터 용돈을 타서 쓰는 경우는 16.5% 등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용돈은 대체로 부모님으로부터 주로 충당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80%)으로 드러났다. 이와 달리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를 청소년들에게 설문 응답한 결과, 기성세대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53%,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45%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해 기성세대의 평가들이 상반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앞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평가와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기성세대들 내부에서의 상반된 평가들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에의 정체성과 아르바이트 활동 참여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실제 초기 일하는 청소년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사들과 기성세대들을 만나며 느꼈던 감정이다. 어떻게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냐는 그들에게 당연한 감정을 서슴없이 노출했다. 청소년아르바이트가 토론회의 주제가 되는 것도 이해하지 않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교사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대중화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서 괴리감을 느꼈었다.

아르바이트의 장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소비생활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 39.3%,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는 점' 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진로 및 적성개발에의 도움'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이득' '부모로부터의 독립심 고취' 등의 1.4%, 5.0%, 8.4%에 불과하여, 아르바이트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주로 아르바이트의 경제적 이득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아르바이트 활동에 부수되는 단점으로는 69.4%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의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아르바이트 활동과 충실한 학교생활이 병행되지 못할 수 있음에 청소년 스스로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학교생활에의 불충실 뿐 아니라 유해환경 접촉에 대한 우려도 9%에 이르러,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이 우리사회에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문제로서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 조성에 가장 주요한 문제점을 지적토록 조사한 결과에서는 청소년

인권 보장의 미흡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32.9%) 지적되고,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 영역의 제한(30.7%) 및 보수수준의 저열성(21.4%), 아르바이트 활동에는 기성세대들의 부정적인 인식(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건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근로활동에 대한 보호 조치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이와 더불어 다양한 아르바이트 영역들의 개발 및 근로여건의 개선 조치들이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 하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결과이다.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가 주요하게 담당할 업무로는 "청소년 부당 처우에 대한 고발, 처리" (32.9%),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및 연결" (32.5%), 그리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활동들의 전개" (17.0%) 등이 가장 높게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일하는 청소년들의 고용보호 활동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 조성보다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 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램들을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한 관련 교육활동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업무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상당수가 취업규칙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종사 동기들도 경제적 목적에만 치중되어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관련 교육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최근에 종사하였던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전단 및 포스터 배포(32.4%), 서빙 및 주방보조(16.2%),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및 청소(15.2%), 상점에서의 판매보조(14.3%), 배달 업무(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아르바이트 유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노동력의 소모가 적고, 기술 없이 종사할 수 있는 단순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 하여 주었다.

아르바이트에서의 부당행위 경험은 먼저, 부당한 임금감액 및 임금 미지급의 경험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무를 한 경우와 그 다음 체벌, 기합 등의 부당한 신체적 위협을 당한 경험과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있었다. 한편, 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경우와 이와 같은 상해에 대해 기본적인 치료비조차 전혀 받지 못한 경우, 근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대한 보호조치가 취업 청소년들에게는 상당 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용 및 급여 등에서 성 차별을 받은 경험, 기본적인 고용계약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임의해고의 경험이 상당했다. 이렇듯 고용계약 대상이 청소년임을 악용하여,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



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의 분석결과를 청소년 고용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고사하고라도, 근로계약자가 미성년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하여 주지 않는 조치들이 상당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의 증대 추세를 감안하여 본다면,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보호 고용 조치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그리고 이에 대한 감독 관리가 보다 철저히 실행되어야 함을 시사 하여 주었다.

‘일’ 하는 청소년지원사업의 가치 경험

일을 정의하는데 ‘노동’이라는 표현을 한다. 청소년들의 일에 대해 접근하며 개인적으로 행하는 일을 노동이라는 정의에 합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노동(勞動)’은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자원 및 그에 따른 인간의 활동을 뜻한다. 흔히 자본, 토지와 함께 생산의 3대 요소로 불린다.<sup>8)</sup> 노동은 보수를 대가로 한다는 점에서 취미, 여가와 같은 인간의 다른 활동과 구분된다. 노동의 대가를 재화의 취득에만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적 대가 이상의 가치를 상실한 노동의 개념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노동을 그 대가로서의 경제적인 산물만 만들어지면 된다는 인식은 다분히 문제가 있는 관점이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인식은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비와 경제적 이득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실태조사에서 보였던 소비문화 중심의 청소년 일의 가치관이 개인적으로 청소년들과 활동을 하며 조직하고 만났던 ‘일’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나타냈다.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아르바이트나 일의 목적이 “소비문화의 분출”이라는 요소가 강한 게 현실이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학교를 그만두고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여럿 만나면서도 알게 된 내용이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보면 “어찌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 소비문화의 주체라며 이름 붙여 놓은 대상은 무조건적 경제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성인들이다. 그들의 경제 논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소비의 틀을 제공했다. 소비를 부추기며 그러한 문화

8) 위키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69785>)

를 제공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가장 큰 대상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뒤에서 아이들이 소비를 위해 일을 한다며 비판한다. 이러한 웃기지도 않은 입시환경과 소비환경을 조장해 놓은 기성세대가 이러한 청소년 소비문화의 문제점을 운운하는 태도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부조리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실태조사에서 보이듯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지원 역할이 선행되었다. 현재까지도 가끔씩 학교 교사나 청소년 관계자들에게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에 대한 상담 전화를 받고는 한다. 대부분의 활동이 지방 노동사무소에 연락해 해결하는 방법 정도였다. 좋은 직업군을 선별해 아르바이트 알선까지도 진행을 했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으며 본질적인 대응은 아니었다. 전국단위 연대가 되어 정책적 제안으로 각 지역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sup>9)</sup>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 직원을 배치하였고 그 직원들과 사무국장들의 청소년단기고용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었다. 각 도나 광역시에 한명이 그 업무만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 또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시정 조치 또한 한계를 보였다. 직접적 시정은 어려워 대부분 노동부에 신고하는 중간역할을 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기본예절, 부모동의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서류 소개에 대한 리플렛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했다. 모든 청소년들이 알기에는 부족했으나 이러한 시정과 개도, 홍보 활동 등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추천하는 정도가 아닌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사업을 진행하며 사회적 환경에서의 적응성을 기르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아이들 수준의 목적”<sup>10)</sup>을 설정하는 데에 소통하고 그러한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면 청소년들은 그 이상의 내용들을 채우려 한다는 믿음이다. 또한 청소년 일의 개념을 앞에서 설명했던 노동의 의미로 국한시키고 싶지 않았다. “노동뿐만 아니라 학습과 여가가 함께 통합되어진 체계”<sup>11)</sup>를 이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필자 또한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이 모두 통합되어진 가치체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일반적인 보수의 대가를 위한 노동의 수준을 넘어서 그 일 자체가 노동이며 여가와 학습이 된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청소년들의 진로를 고민하는 수준도 이러한 가치로 접근을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Small Business라는 이름으로 또래강사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에도 마

9) 2008년 2월 현재 청소년진흥센터로 불린다.

10) 개인적으로 “순수한 가치가 녹아 있는 목적”이라고 부르고 싶다.

11) 일하는 청소년지원사업의 초기 학자와 관련 전문가 분들과 몇 차례 토론이 있었다. 그 당시 이광호 교수님(경기대 청소년학)과 토론하며 어떤 학자의 글을 인용하며 밝혔던 내용인 듯하다. 개인적으로 ‘일’에 대한 통합적 사고로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로 그 당시 작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찬가지이지만 그 당시 청소년동아리 활동 조직의 장점을 크게 보고 있던 터라 단체의 회관에서 청소년동아리를 최선을 다해 육성 했었다. 그 당시 23개 동아리 4~500여명의 청소년들이 회관에서 조직되어 활동했다. 이들 동아리 회원들 중 댄스, 노래, 힙합 동아리들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알려져 그들의 문화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가게가 오픈할 때 앞에서 춤을 추거나 다양한 기관의 행사에 찬조 출연해서 사례비를 지원받는 형태였다. 교육적 가치나 다른 목적은 있을 수 없었고 아르바이트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성인들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용가치 정도여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례로 눈 오는 겨울에 작은 업체가 오픈할 때 댄스동아리 아이들이 근 8시간을 야외에서 춤추며 안내를 했었는데 고작 3만원을 준다든지 하는 행태들이 벌어졌다. 또한 자신들의 문화를 전문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나 댄스나 노래 등 실제 실용음악에 대한 성장의 토대가 지방중소도시에서는 너무나 미약했다. 이에 아이들과 소통하며 만들어진 내용이 포레강사 프로그램이었다. 힙합이나 안무댄스, 마술 등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강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수는 상당히 많았다. 이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화 활동의 강사가 되고 그들이 가능한 수강생도 모집하여 하나의 평생교육원 형태의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강사비는 수강생비의 60% 정도가 지급되어지고 40%는 전단지, 현수막 등 홍보비에 사용되었다. 단체 내 사무실에서 홍보와 접수 등을 받았으며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연기(연극 동아리 회장 강사), 신나는 힙합교실(Mc.top 합합동아리 회장), 수화(자원지도자), 신바람통기타교실(선교동아리 회장), 신기한 종이접기(자원지도자), 사물놀이(소리바라기 회장), 첫 걸음 만화교실(만화동아리 하늘 회장), 노래교실(S.R노래동아리 회장)이었다. 이 중 종이접기는 폐강되었다. 1개월여 프로그램을 마친 후 청소년강사들에게 평가서를 받았다.

그 중 강사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작성한 두 가지 평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초 연기 강의 이후...

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이다.(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연기(대사, 동작)하는 데 필요한 발성, 발음 등에 주력해서 가르치려 하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기와는 큰 차이를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기대만큼 많은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준비가 부족했다. 단순히 대본을 주고 읽히거나 정석대로 기초연습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이 금방 지루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앞으로 가르칠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면 좀 더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러면 게임 등)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 같다. 연기는 누구나 한번쯤은 배워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직접 배우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았다. 연기란 쉬운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연기"란 것은 단순히 "흥내"일 뿐이다. "흥내"가 "연기"로 변하려면 가슴으로 직접 느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 힙합교실 이후

요즘 아이들은 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관심이 단순히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춤을 배움으로써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포레강사 프로그램 중에서 힙합교실을 신청한 아이들의 수가 타 프로그램에 신청한 아이들보다 숫자가 월등히 많은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춤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은 만큼 기관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의 욕구를 일부만 채워주고 있다. 하지만 기관이나 학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많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현재는 대부분 포레나 선배가 가르치고 있다.)

이번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YMCA에서 4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동작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벅찼던 것 같다. 많은 수를 나 혼자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선생님을 더 많이 총원했으면 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춤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나누어서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그 보람이 더 컸던 것 같다.

강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보기 보다는 자신들의 문화적 관점에서 더욱 치중하여 관심을 갖는다. 청소년동아리활동을 행하며 자신들의 전문성을 성장시키며 함께 진행했던 '일'의 장점이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만화동아리 하늘 회원들은 차이가 있는 다른 목적을 설정하고 캐릭터 사업(일)을 진행했다. 하늘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시행 했다가 보다는 자신들의 회지 발간과 전시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동아리방에 있는 의자와 책상을 직접 들고 시내의 중심가로 나가 자리를 잡았다. 자리 잡는 과정에 주변의 노점상 분들과 마찰이 있었으나 경쟁관계가 아니었으며 좋은 자리가 아닌 구석으로 움직이며 어려움을 극복했다. 매주 토·일 이틀 동안 동아리모임을 갖고 바로 나가 3~4명은 캐릭터 작업을 행하고 4~5명은 주변의 행인들에게 홍보하는 작업을 했다. 보통 1회 나가면 2~3시간 만에 3만원에서 많게는 5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이 돈을 모아 연말에 단체 내 회관에서 작은 만화 전시회를 열고 회지를 발간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눈물겨운 작업이었다. 아이들과 늦은 밤까지 함께 하며 작업 준비하고 작은 공간에 그림 진열하며 청소하고 홍보지 만들던 기록이 새롭다. 늦은 밤에 귀가하지 않으려는 아이들과 실랑이하고 바래다주었다. 아이들은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또한 디스 주니어(DC, Jr)라는 비보이(B-boy) 동아리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하며 사례비를 자신들의 활동비로 사용했다. 공연이 없는 경우에는 장판<sup>12)</sup>을 매고 지역의 상가(영동)근처를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해 모금함을 앞에 둔 채 2~3시간씩 춤을 추었다. 보통 한번 나갈 때면 5만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모금을 해 왔다. 이 돈은 그 당시 청소년 봉사동아리인 '빛' 회원들에게 모두 주었다. 봉사활동 하는 청소년들은 격주로 독거노인분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왔으며 이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과일 등을 구입해서 드리고 말벗이 되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이 사회적 긍정성을 띠고 전이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또한 '일'의 대가로서 중요한 부분이다.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금전이 쓰이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활동이 일반적인 노동의 대가로서 금전적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를 소득으로 얻는다고 보면 매우 중요한 일의 경험이라 할 수 있겠다.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는 대목이다.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청소년기의 일을 바라보는 시각과 성인기에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와 달리 앞에서 설명한 청소년동아리 회원들이 진행했던 돈벌이의 목적의 순수성은 '일'의 가치에 더욱 부합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르바이트의 장점에 대한 조사에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소비생활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는 점'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진로 및 적성개발에의 도움',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이득', '부모로부터의 독립심 고취' 등은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아르바이트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주로 아르바이트의 경제적 이득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을 포함한 '일'의 가치를 재정립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일의 가치, 목적성의 설정을 일하는 청소년지원사업을 행하며 깨닫게 되었다. 일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일방적인 사회 환경 또한 최소한 청소년들에게만 좋은 돈벌이 환경을 조성해 주며 그에 대한 권리만을 강조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최

12) 그 당시 동아리시설로 사용하던 공간은 본래 구. 검찰청 건물이었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춤을 추거나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했다. 오래된 건물이어서 바닥이 거칠어서 장판을 구입해 깔고 연습을 했었다. 공간 활용도를 많이 하기 위해 장판을 걷어 내며 다른 활동을 하기도 했다.

소한 청소년들의 일은 "노동과 학습, 여가" 이 세 가지가 통합되어야 옳다. 노동과, 학습, 여가 이 세 가지 일이 각자인 사람의 '일'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적 논리로 일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더욱 문제가 커질 것이다. 청소년기에 이 세 가지 기준이 통합된 자기 가치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왜 '일'을 하려는 지에 대한 기본 목표의 고민과 꼭 할 수밖에 없는 논리의 개발 등 일을 접근할 때의 기본적 가치 설정을 위한 시간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 외 일하는 청소년지원사업의 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일하는 청소년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 개념으로 접근했다. 실무자는 필자 혼자였으나 이름은 거창하게 '군산YMCA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설정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청소년 직업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했고 진로상담도 강화하려 했다. 자문단도 구성했었는데 본래 있었던 청소년위원회에 일임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를 시작으로 일하는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 계층과 논의했다. 그 중 실제 인문계고교에서 학업도 열심히 하며 신문배달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단체의 청소년회원의 이야기는 지금도 인상적으로 남는다. 또한 진로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시행했다. 일반적인 수직적 진로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제 자신이 원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인을 만나고 소통하며 내용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정이 짧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작았으나 청소년들의 반응은 좋았다. 청소년 현장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기본 운영모델이 되었다. 몇 년간 진행해 오며 과거 우리 세대의 직업관을 현재의 청소년들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나름 데로의 직업군 선정이 필요해서 지도자 입장에서 의사, 검사, 변호사, 한의사, 간호사, 기업가, 건축사, 교사 등 '사'자 돌림의 직업군을 먼저 선정해서 지역에서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을 꾸렸다. 그런데 의외로 참여하는 청소년들 중 이러한 직업군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었다. 가수, 백댄서, 밴드 등의 연예계 분야의 직업군을 많이 원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도 원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군이 성인들과 차이를 보였다.



경험으로의 제언

청소년 노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만을 접근한다면 현재의 실용주의 운운하는 차기 정부의 '경쟁관계'의 일자리 형성 이외에는 일에 대한 그 이상의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시장을 정책적으로 보호하여 임금이나, 시간, 폭력, 추행 등의 기성세대들의 잘 못된 부분만을 철저히 시정하는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존 기성세대들의 경제 환경을 아르바이트 하기 좋게 바꾸는 것 이상의 가치는 없다. 이러한 청소년 노동 환경 조성의 역할만을 행한 후에 결국 청소년들도 성인들이 '일'을 접근하는 수준과 별반 다른 가치체계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윤과 소비생활만을 영위하는 목표가 만들어 질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아르바이트 등 노동시장의 보호와 규제는 정책적으로 관에 맡기고 민간에서는 제안하고 감시하는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청소년 보호 고용을 위한 관련 법 및 제도적 장치들을 실제화 시켜 활동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지만 민간 기관의 주 운동과제는 아닌 것 같다.

청소년 관련 민간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의 가치와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가치체계를 수립하는 접근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가치체계를 말한다. 일의 목적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치부하여 그 돈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와 비례하는 행국의 모순된 모습이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한 노동의 차별과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상승할 것만 같다. 이를 위해 청소년 자신들이 주체성을 확립해야 하며 그들의 자주적 활동을 통한 새로운 일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즉, 기성세대의 경제적 논리에서 파생된 일자리가 아닌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모델링하고 성장시켜야만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업과 연계하여 실제 그 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와 막연히 돈 잘 버는 직업 이면에 소중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며 알아 갈 수 있는 체계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관보다는 민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행할 수 있다. 필자가 아이들과 함께 했던 청소년동아리활동을 일과 결부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를 아이들 수준에서 소통하며 가치 있게 사용하고자 노력한 일들도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 시간을 투자해 자신만을 위한 더 큰 돈을 벌기위한 목적보다는 내가 가진 기술이나 남보다 잘하는 그 무엇으로 공동체적 관심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청소년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겠다.

일하는 청소년 지원 사업 초기에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인간적인 발달에 긍정

적인 기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탈과 비행의 징검다리가 될 것인지 고민하기도 했다. 현재 그러한 우려는 문제될게 아니다.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그들의 일'이 '그들을 위해', '그들을 주체'로서 세워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운동, 인권운동, 시민운동 등 운동(Movement)이라는 이름의 단기적 활동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사람이 살아가며 세대가 변해도 그 중심의 운동방향과 목적에 따른 활동은 지속적이다.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운동은 지속된다. 운동의 목적하는 바가 무언지에 따라 단기적 활동도 있고 장기적 활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책 하나 바꾸고 한 두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한두 업체를 바꾸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운동의 내용은 그리 많지 않으며 민간운동 진영에서도 그러한 단기적 운동의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뿌리를 제대로 성장시키는 운동의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역사 운운하며 주체성을 강조했다. "청소년의 주체성"이 일하는 청소년 지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성장하며 자신들의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일'이다. 평생 먹고 자는 생리적 시간 이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주체성을 형성시키고 지원하는 데에 일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단순한 청소년아르바이트 지원이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정도만을 접근한다면 본질적 뿌리의 힘겨움은 그대로 놔두고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내는 정도라는 생각이 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정작 우리 운동진영에서는 '지속성'을 가지고 뿌리를 키워낼 수 있는 운동의 관점이 중요하겠다. 운동의 시작은 유행이 아니다. 운동의 대상이 주체가 되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단체나 기관의 실적 이외에 그리 큰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아이들과 함께 하며 대상이 아닌 주체 그 자체로 인정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아이들은 가장 순수한 집단이며 사회변화의 뿌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안에 '일'이 있다.



청소년 노동자 조직화 방향

## 청소년 노동자 조직화 방향

김진익(민주노총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연속화해리포트 (5년-10년)



## 청소년 노동과 학교의 역할

천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

### I. 긍정적인 역할

1. 학교 교육은 청소년 노동에 대하여 호의적임
  - 노동의 신성함, 귀중함, 유용성에 대해 교육함
2. 학교 교육은 국민이 노동을 잘 하고 이를 통해 생계 해결과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활동함
  - 지적체 교육, 기능 교육
  - 노동 가치 교육
  - 사회생활과 협력 체제 형성

### II. 부정적인 역할

1. 정신노동을 지나치게 강조함
  -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일반 노동자의 노동을 경시하고 머리를 쓰는 전문적인 기능과 지식만을 숭상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 성적 위주의 서열화로 노동의 서열화를 유추시키고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하여 열심히 일하려는 사회적 기풍 조성에 저해되고 개인에게도 실질적 의미에서 사회생활과 사회적응을 어렵게 함
2. 청소년 시기를 준비기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노동과 직업 생활을 경원시함
  -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졸업까지 노동하지 말고 학업에만 몰두하도록 하

- 여 청소년의 노동 활동을 장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그래서 노동의 기쁨과 사회 적응, 자아실현, 자기 성취감의 기회를 감축시킴
  - 나아가 청소년 노동을 일종의 일탈 행위로 은연중에 생각하는 분위기도 조성함

### III. 종합

1. 긍정적인 면은 부각하고 부정적인 면은 극복하는 것이 요구됨
2. 조화 있는 지도가 요구됨
3. 가정, 사회와 함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과 가치 형성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음
  - 기성세대와 국민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됨
  - 언론 매체의 영향도 매우 큼
  - 건전한 노동 의식과 사회적 장려가 있어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사회 적응을 잘 하며 개인적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함
4. 노동, 노동조합, 노동운동의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도입되거나 강화되어야 함
5. 청소년의 노동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도 지속되어야 함
  - 현재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학생들이 보다 접근하기 쉬고, 생활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근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는 방안 습득 등.

### [참고 1] 7차 교육과정 상의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이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급별 교육 목표를 둔다.



1.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2.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3.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참고 2] 7차 교육과정상의 '노동' 혹은 '근로' 용어가 들어간 내용

- 교육과정운영 관련 내용으로 :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 범교과 학습은 재량 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

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 교수학습 자료 관련 내용으로 : 교과서 등 교수학습 자료에 사용하는 제재는 가급적 제 7 차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과 '4.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에 제시한 '도덕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세계 이해 교육, 해양 교육'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한다.

- 도덕교육과정 <8 학년> (1) 사회생활

(라) 생활 속의 경제 윤리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경제 윤리의 내용들을 알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① '삶의 질' 을 추구하는 생활
- ② 근검절약하는 생활
- ③ 근로와 정당한 부의 추구
- ④ 노사 화합과 협력

[참고 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상의 '노동' 혹은 '근로' 용어가 들어간 내용

- 도덕 9학년 (3) 세계 평화와 인류애

(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편견 극복

- ③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견이나 오해(혼혈아, 해외입양아,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편견 등)

- 사회 9학년 <일반사회 영역>

(8)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 ⑤ 경제생활 속에서 소비자(저축·투자자), 생산자(기업가와 노동자),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과 책임을 탐색한다.



- 교육과정 운영 : (예)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 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 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 사회 6학년 (2)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 ⑤ 국제 경쟁력 증진을 위한 기업가, 근로자, 정부의 역할을 이해한다.
- 영어 교육과정상의 소재
- 16. 근로, 진로 문제 등 개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 청소년노동과 지역운동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례)

정 경 화(민주노동당 고양시 위원회 위원장)

### ★ 2006년 1월7일 제 1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1. 준비과정

- 노동위원 3명으로 준비팀 구성
- 노동위 회의를 통해 '다같이들자 일터한바퀴' 보드게임도 해보고 리허설도 진행
- 공무원노조 협조로 칼라프린터기를 활용, 교육에 필요한 각종 그림 출력
- 노동위원중 노조 상근자가 이름표, 길안내판, 제목글씨 등 필요한 물품 직접 만들어 옴
- 동대문지역위원회에서 제작한 교육자료집 그대로 활용(고양시위원회로 가져서^^)
- 조직대상을 정해 수시로 참석여부 확인(청정넷, 당원딸, 분회장 제자들)

#### 2. 홍보

- 지역위 홈페이지 통해 당원들에게 공지

#### 3. 조직

- '청소년정치네트워크' 라는 청소년 단체의 회장에게 협조 요청, 5명 확보
- 당원의 딸이 친구들 조직하기로 했는데 넘 멀어서 2명만 참석(고대1학년생들임)
- 비정규직영어교사인 분회장 한 분이 본인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4명 조직



4. 언론조직

- EBS '플레랑스' 에서 취재요청 들어와 응함(윤성봉 정책연구원이 연결해줌)
- 청소년인터넷신문 '바이러스' 에서 취재 음(중앙당 청소년위에서 연락해줌)

5. 교육진행경과

장소는 당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2층을 빌렸다. 건물주의 협조로 무료로 사용했고 아직 미분양된 공간이어서 바닥은 그냥 시멘트였고 지저분했으나 노동위원들이 행사 당일 아침 일찍 나와서 깨끗이 청소하고 썰렁하지 않게 풍선불어 꾸미고 제목도 예쁜 글씨 만들어 붙이는 등 정성껏 준비했다. (사실 전 날 잠을 설쳤다는 당원도 있었다. 두근두근~)

음악도 미리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곡으로 mp3에 담아 틀어놓았다.

예산의 거의 90%를 차지한 (그래봤자 3만원 정도였지만) 간식도 가지런히 담아 한 쪽 코너에 준비해두었다.

추위와 낮섬을 무릅쓰고 11명의 청소년, 청소년 친구들이 드디어 민주노동당 사무실을 찾아왔다. 준비팀 외에 관심 있는 당원들도 5명 정도 참석하였다. 동대문지역 위에서도 연대차원에서 한 분이 오셨고, 한 달 전 동대문지역위 교육 때는 우리지역 위에서 두 명 갔는데. ㅋ.

식순에 의해 지역위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었고, 진행팀 소개와 교육의 취지, 일정, 광고 등을 했다. 아직도 어색해 하는 친구들~.^^;;

우선 <몸풀기 마음열기> 순서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놀이를 진행.

그리고 <동그라미의 비밀>은 3개조로 편성하여 진행하고 다시 모여 화이트보드판에 조별 토론내용을 발표하여 공유했다.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는 조별로 권리카드와 상황카드를 주고 직접 상황극을 만들어보았다. 3개 조가 다시 모여 발표회를 가졌다. 넘 웃기는 대사와 동작이 많이 연출되었다.

<출구를 찾아서>는 그냥 그림만 화이트보드판에 붙여놓고 재미있게 얘기해줬다.

<평가>는 색지별로 모아 함께 공유했다. (평가내용 별첨)

★ 8월19일 제2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준비과정>

한 달 전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준비팀을 다시 구성

세 차례의 준비팀 회의로 교육내용, 역할분담 결정

일산동구청 통해 장소협조, 150명 고양꽃박람회 전시장 세미나실 대여

<조직>

전교조 고양 중등지회에 협조요청, 교육위원 선거 때문인지 제대로 조직 내 전달이 안 됨.

실업계 선생님들께 전화했으나 부담스러워 함. 솔직히 어렵다고 말씀하심.

일산종합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직접 만나 협조요청(상품권이나 봉사 점수나 뭐가 유인요인이 있어야...그리고 의무 먼저 가르쳐야 하지 않나? 등의 이야기를 함)

일산문화광장에서 풍물 연습하는 저동고 친구들에게 접근, 전화번호와 이름 받았으나 이후 연락 두절

교회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는 당원이 직접 홍보물을 만들어 3호선 4곳의 전철역 주변을 자전거로 돌며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 배포함.

40년생~60년생 당원 연락처 확보하여 (150여 명) 자녀들 조직 독려 전화

웹자보 제작하여 지역 시민단체에 홍보

아수나로, 오답승리의 희망, 청소년인권네트워크 등에 웹자보 게시, 아수나로의 한 친구에게 조직이 가능한가 물었으나 고양시에는 회원이 없다고 답변.

청소년정치네트워크에서 5명 조직해주겠다고 함

당원의 자녀 2~3명 조직.

결국 150 명의 고양시 꽃박람회전시장 2층 세미나실도 예약해두고 교육준비 회의도 세 차례 정도 했으나 교육생 조직에 실패하여 행사 5일 앞두고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느낀 점>

1. 청소년단체, 교육관련 단체와 일상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 2. 일회적인 교육이 아닌 조직화를 목표로 후속사업을 배치해야 한다
- 3.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의 청소년, 청소년들의 실태, 욕구조사, 결과분석을 기준으로 명확한 타겟을 잡아 사업을 펼쳐간다.
- 4.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교육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1월 교육 평가내용

<좋았던 점>

- 노동자라는 단어가 우리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던 활동인 거 같아요- 그동안 모르고 있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도 Good~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기획력을 보니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좀 더 널리 개최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군요.
- 평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서 ... 우리들이 그동안 아리 못해서 행하지 못했던 권리들을 알게 되었던 게 가장 좋았다.
- 평소 생소한 내용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구요, 형식도 그냥 강연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서 좋았어요.
- 생소했던 '노동' 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현재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부당함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처음 몸을 움직이며 친해지는 시간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을 듯-. 잘못 알고 있거나, 의심적인 부분들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였다.
- 알바를 하면서 당연하구나 하는 것들도 권리라는 것이 있어 새로웠다. 다음부터 알바를 하면 나에게 이익 되는 것들을 새로 알게 되어 좋았다.
- 많은 걸 알게 되어 사회에 나가서 써 먹을 수 있다.
-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연극도 하고 토

- 론도 하는 교육이어서 유익했습니다.
- 노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어 좋았다.

<안타까운 점>

- 사용자에 대한 표현을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는 것 같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군요. 일을 함에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호 신뢰를 쌓으며 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 너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신경을 쓰신 것 같군요
- 굉장히 쉽고 재미있긴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좀 더 전문적이고, 많은 내용을 배우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 내용이 조그마한 범위라 조금 아쉬워 . 더 많은 것을 알려줬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그 방법들이 아직 우리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방법들이어서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들었다.
- 책을 보니 월래프로그램에는 일터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알아보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일터에서의 성희롱의 범의(언어성폭력은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또한 활동을 통해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다.
-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 노동자들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는 강의 같다
- 시간이 조금 길어 자칫 지겨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처음이어서 그런지 다소 싸인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 재미있었다. 다음부터 더 많은 사람과 이런 교육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
-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구요, 좀 더 많은 내용, 깊이 있게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
-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ㅋㅋ 준비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 사회에 이러한 교육이 많지 않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많은 교육을 통해 사회 전체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 고용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고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면 이런 방법들, 권리들을 행할 수 있게 되길.
-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보다 실용적인 내용이 많아졌으면.
- 앞으로는 교육할 때에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위치와 서로간의 존중해 주어야 할 것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를 먼저 가르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년 인권운동과 청소년 노동

(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은 참 어려운 일이야” )

다이루(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는 청소년노동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안전한 환경과 분위기에서 노동할 권리,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권이다. 지금 말한 이 권리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을 넘어 일부 보수적인 사람 중에도 부분적으로라도 옳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현재 법적으로도 부분적으로 인정된 권리이지만 사업주 또는 기업에서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은 저 권리들이 보장되도록 하자, 저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알리는 선에서 활동해 왔다고 생각한다. 즉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청소년노동인권을 말한 게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선을 넘어선 ‘청소년노동인권’ 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부분의 청소년노동인권운동에서는 청소년들을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운동을 해왔던 거 같다. 물론 법에서도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만 18세미만)는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가 없고, 특히 만15세미만 청소년들은 보호를 위해 보호자동의는 기본이며 노동부의 승인 없이는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청소년노동보호정책이 나온 이유를 모두 무시하는 건 아니다. 기업 또는 사업주들이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두 눈깔 부릅뜨고 저렴한 노동력을 찾다 보면 가장 만 만 한 건 청소년,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끔찍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청소년노동보호였을



것이다. 하지만 보호만으로는 노동착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바꿀 수 없다.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가 되고 착취당하기 쉬운 존재로 인식되는 데는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해 주입시킨 '미성숙한' '불안정한' '불완전한' 같은 보호해야 되는 이미지가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본다. 고용주들의 생각 속에도 저런 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임금미지불 또는 폭력 같은 노동인권침해가 쉽게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보호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당연시되어지고, 청소년들 스스로도 독립할 수 없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청소년노동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스스로 이런 이미지와 대우에 저항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현재의 체제 속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 중에 보호자의 동의를 못 얻거나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을 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의 보호주의적인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시각은 그런 청소년들이 아예 노동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다고 청소년노동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을 전부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다양성 부족(학생인권중심, 주체도 학생인권쪽 사람 중심(?))

청소년들의 노동의 권리 또한 분명히 청소년들의 인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노동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많은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직접적인 행동이 없었던 이유는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내가 느꼈던 이유 중 나름 큰 이유의 변명 겸 내부고발(?)을 하고자한다.

#### 학생인권이 다였던 청소년인권

청소년인권운동은 학생인권운동으로 시작되어 학생인권운동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 또는 학생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비청소년활동가들이 다수였다. 그와 함께 청소년인권운동의 주된 이슈는 두발자유, 체벌금지 같은 '학생인권' 이었다. 노동하는 청소년 당사자들은 그것이 직접적인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이라는 공감의 적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노동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인권운동을 '남의 이야기' 로 생각하거나 한 번 발을 들었던 사람도 청소년인권운동을 떠나게 되었다. 당사자가 없기 때문

에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있었고, 그러면서 청소년인권운동은 학생인권운동이라는 틀에 더 갇히게 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와 함께 아직 개척된 적 없는 청소년노동인권이라는 분야(?)에 진출하는 자체가 역량 딸리는 청소년인권운동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학생인권을 다루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조직하기 위해서는 '학교' 라는 공간을 이용하면 비교적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 학교에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몇 백 몇 천 명씩 모여 있고, 노동인권과 비교했을 때 두발규제나 체벌에 부담함이 조금은 더 알려진 상태다. 하지만 청소년노동인권 당사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청소년들을 소규모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몇 십개의 사업장을 찾아다녀야 겨우 백여 명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와 함께 자신의 노동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조직하는 건 학생들을 조직하는 것에 비해 더 어려운 일이다.

다른 면에서의 부담도 있다. '청소년노동인권' 에 대해 처음 문제제기가 되었던 방향이 청소년노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주의적이었고 사실상 지금까지 보호주의를 넘어선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담론에 대한 진전은 많지 않았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 아 그거 보장돼야지, 하는 뻔 한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인 청소년노동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갖고 있지 못했다. '청소년보호' 라는 불편한 주제와 얽혀 있는데다가 청소년노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가 막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진영이 청소년노동인권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사 대상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른들은 방관하거나 학습에 방해 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 현실에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권리를 보호해 주기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교사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을 알아 보기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 연령 ( 만 )세	□ 담당 교과목명 ( )
□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일반계고등학교 4) 전문계고등학교	

1. 귀하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 1) 예
- 2) 아니오

2.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1)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고 한다.
- 2)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라고 한다.
- 3)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함께 확인 한다
- 4) 부모님께 알리고 하는 지 확인 한다.
- 5) 알바는 학생의 자유이므로 간섭하지 않는다

3. (☑ 답입교사만 답변) 귀하는 답입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1) 전혀 모른다.
- 2) 짐작만 하고 있다.
- 3) 대략 알고 있다
- 4) 장소를 포함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

3-1. 파악하고 있다면 몇 명(한 학급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0~5명
- 2) 6~10명
- 3) 11~15명
- 4) 16~20명
- 5) 21명 이상

4. 학생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임금체불
- 2) 과도한 근무시간
- 3)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
- 4) 저임금

5. 학생이 아르바이트 피해를 상담해오면 ?

- 1) 부모님께 의논하라고 한다
- 2)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한다
- 3) 들어주기만 할 뿐이다
- 4)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본다
- 5) 아직 물어 본 학생이 없다

6.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알고 가야할 것은 ?

- 1) 최저임금
- 2) 상담센터 전화번호
- 3) 노동의 소중함과 자부심
- 4) 직장예절

7. 귀하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8. 귀하는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8-1 (8. 아니오 일 경우만 ☑) 노동인권교육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 1)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 2) 학생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 3) 학교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 4)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자료가 없어서
- 5) ( )

☞ 설문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